

예산·결산 자문위원회 규정

- 제정 : 2013. 10. 29.
- 개정 : 2016. 3. 9.
- 개정 : 2018. 3.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의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예산·결산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자문 사항
2.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자문 사항
3. 재정 수입확대 추진에 관한 자문사항
4.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본교의 전임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 7인내외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총장이 임명한다.

1. 교원중 위원은 위원장 포함 4인으로 한다.
2. 사무직원중 위원은 계장이상의 직위에서 3인을 둔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평가실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에서 자문한 중요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임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기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총장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3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 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경영관리실의 사무직원 중에서 각1인을 총장이 임명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3-0-32 예산·결산 자문위원회 규정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